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)

제63조 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등재된 장기요양기간 만료일로 한다. 또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64조 (계약목적)

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65조 (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)

①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용한다.

※ 노인요양시설 (입소자 2.1 : 1 인력배치 기준 / 보건복지부 고시 2026.1.1. 시행)

(단위 : 원 / 1일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 ~ 5등급
노인요양시설	93,070	86,340	81,540

② 일반대상자 (본인부담률 20%)

(단위 : 원 / 30일 기준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 ~ 5등급
총 계 (요양보험 + 개인부담)		2,792,100	2,590,200	2,446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 (80%)	2,233,680	2,072,160	1,956,960
개인 부담	요양급여비용 (20%)	558,420	518,040	489,240
식재료비 (간식 포함)		390,000	390,000	390,000
소 계 (개인부담 + 식대)		948,420	908,040	879,240

③ 경감대상자 (본인부담률 12%) 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

(단위 : 원 / 30일 기준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 ~ 5등급
총 계 (요양보험 + 개인부담)		2,792,100	2,590,200	2,446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 (88%)	2,457,048	2,279,376	2,152,656
개인 부담	요양급여비용 (12%)	335,052	310,824	293,544
식재료비 (간식 포함)		390,000	390,000	390,000
소 계 (개인부담 + 식대)		725,052	700,824	683,544

㉔ 경감대상자 (본인부담률 8%) — 추가 감경대상자

(단위 : 원 / 30일 기준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 ~ 5등급
총 계 (요양보험 + 개인부담)		2,792,100	2,590,200	2,446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 (92%)	2,568,732	2,382,984	2,250,504
개인 부담	요양급여비용 (8%)	223,368	207,216	195,696
식재료비 (간식 포함)		390,000	390,000	390,000
소 계 (개인부담 + 식대)		613,368	597,216	585,696

㉕ 무료대상자 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(본인부담 0%)

요양급여비용 전액(100%)을 공단이 부담하며, 식재료비·간식비는 별도 부담합니다.

㉖ 비급여 비용 부담액

(단위 : 원)

비급여 항목	1일 기준	30일 기준	비 고
식 대	4,000원 × 3식 = 12,000 원	360,000원	식재료비
간식비	1,000원 × 1회 = 1,000원	30,000원	1일 1회
상급침실 이용료	7,000원 / 1박	이용일 수 기준	1인실 사용 시
이·미용료	실 비	-	이용 시 청구
소모품비 (기저귀·물티슈 등)	실 비	-	개인 사용분

비급여 항목	1일 기준	30일 기준	비 고
병원 진료비 / 약값	실 비	-	의료기관 청구액

제66조 1항 (신원인수인의 권리)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.
-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.
-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/외출에 관한 권리.
-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.
-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·식사·생활상담·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.
-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⑪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제66조 2항 (신원인수인의 의무)

-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.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.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.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·간병/입·퇴소 절차·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.
-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·파손·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.

제67조 (계약의 해제)

- ① 입소자(보호자)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,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(사망), 서비스 이용료 (본인부담금) 연체 및 요양원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68조 (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비용)

- ① 시설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서비스 제공 내역
신체요양급여	① 세면도움 ② 구강관리 ③ 몸 청결 ④ 머리감기기 ⑤ 몸단장 ⑥ 옷 갈아입히기 ⑦ 목욕도움 ⑧ 배설도움 ⑨ 식사도움 ⑩ 체위변경 ⑪ 이동도움 ⑫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⑬ 화장실 이용하기
일상생활지원	이동, 신체기능 유지·증진(운동·일상생활 훈련 보조), 문제행동 대응, 의사소통(전화 이용 도움, 산책 동행), 침구·린넨, 환경관리(환기·온도), 이용자 물품관리, 세탁·세척, 가사지원, 외출 동행
개인활동지원	① 외출 시 동행 ② 일상업무 대행
정서지원급여	① 말벗·격려·위로 ② 생활상담 ③ 의사소통 도움
기능평가 및 훈련급여	① 신체기능 훈련 ② 기본동작 훈련 ③ 일상생활동작 훈련 ④ 물리치료 ⑤ 언어치료 ⑥ 작업치료 ⑦ 인지·정신기능 훈련 ⑧ 기타 재활치료
치매관리지원급여	행동변화 대처
응급급여	응급상황 대처
시설환경관리급여	① 침구·린넨 교환 및 정리 ② 환경관리 ③ 물품관리
전문 간호 및 처치 서비스	검사(검체 채취), 진료협조, 관련기관 의뢰, 응급상황 대처, 사후처치, 간호기록, 투약·주사, 감염예방, 치료 및 처치(호흡기·피부·영양·온냉기법·배설간호 등)
복지지원 서비스 (행정)	상담, 교육, 레크리에이션 및 종교활동 제공, 사례관리회의, 서비스 연계, 입·퇴원 등록, 자원봉사 관리 등

제69조 (특별한 보호)

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 기준

-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-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
-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 상황,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알린다.
-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- 4인·3인·2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 (단,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)

-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낮은 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70조 (의료절차)

- ① 입소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기관 이용은 수급자 및 가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한다.
- ②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협력 의료기관이나 근접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.
- ③ 응급한 경우에는 별도 응급 의료기관 이용 절차에 따른다.
- ④ 촉탁 및 협력병원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처치를 지시할 경우 지체 없이 가족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건강을 담당하는 간호(조무)사가 입소자의 건강 이상을 발견할 경우 가족에게 연락한 후 협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⑥ 입소자가 매우 응급한 경우 의료적 조치가 가능한 근접 병원으로 이송한 후 가족에게 통보한다.
- ⑦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.

제71조 (시설물 사용)

- ① 본원에 수급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은 입소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입소자를 위한 모든 시설물은 턱이나 모서리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입소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고의적인 파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고의적으로 물품을 파손하면 원형과 같은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2조 (배상책임)

- ① 시설은 서비스 제공 직원의 과실로 입소자가 입는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수급사유 발생 시 입소자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② 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의 배상 책임은 시설운영자와 원인을 제공한 직원이 공동 책임을 진다. 단,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③ 입소자의 부주의에 의한 상해 및 사망의 경우 입소자 및 그 가족은 배상책임을 시설에 요구할 수 없다.
- ④ 입소자의 고의에 의한 신체 손상 및 사망의 경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은 시설에 대하여 민·형사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73조 (운영규정 개정)

- ① 운영규정의 개정은 시설대표 및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- ②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며, 동표일 경우 시설대표의 결정에 따른다.

제74조 (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)

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을 따르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(보호자)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
- ④ 비급여 항목의 단가가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경우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작성일 : 2026년 1월